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28호, 2021. 11. 19., 일부개정]

환경부 (화학안전과-총괄) 044-201-6840 환경부 (화학안전과-영업허가, 교육, 도급) 044-201-6832, 6836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수입, 확인명세서) 044-201-6847, 6781 환경부 (화학안전과-취급시설기준) 044-201-6837, 6844 환경부 (화학안전과-화학사고) 044-201-6838, 6839 환경부 (화학안전과-화학사고) 044-201-6843, 6833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력 사업
-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중소기업 선정 및 모범 사례 홍보

[본조신설 2016. 7. 6.]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 4.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 5. 법 제47조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제6조에 따른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 7.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8.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9.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0.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
- 11.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 5. 8., 2017. 7. 26., 2018. 11. 27., 2020. 9. 29.>
- 1.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 2. 국립환경과학원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
-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
- 4.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소속 전문가

- 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전문가
- 6. 화학물질 관련 업계 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 ⑥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 1. 정기회의: 연 1회
- 2. 임시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1. 27.>

- 1.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 2.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
- 3.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9.>

- 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 개정에 관한 계획
-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 사용 등에 관한 계획
- 4.「교통안전법」제28조,「선박안전법」제41조 및「항공안전법」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

- 1. 유해화학물질
-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 3.「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 2.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 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① 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연간 100킬로 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을 말한다.
-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 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목 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 8. 1.>
 -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 3. 부탄가스
 -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 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 6.「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3. 30.>
-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에 필요한 조치
-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 4의2.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 이행 및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
-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 6.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 7.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 ㆍ 감독에 필요한 조치
- 8.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 9. 삭제 < 2021. 3. 30.>
- 10.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 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3. 30.>
 -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제13조의2(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현황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화학사고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명이내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 조사시기와 기간 등을 정한다.
 - ③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된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장 또는 구성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화학사고 조사단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화학사고 조사단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또는 국민에게 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관세법」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을 신고한 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수입자에 관한 자료
 - 2. 「관세법」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 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 ②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에 관한 자료
 - 2.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 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 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 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 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 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7. 6., 2017. 5. 8., 2018. 11. 27., 2019. 11. 26., 2021. 3. 30.>
 -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
 -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분석
 -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 2의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제출한 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통보
 - 2의4.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보완 요청 및 수정·보완된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서의 접수
 - 2의5.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 접수
 - 2의6.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 2의7.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필요성의 인정
 - 2의8.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
 - 2의9.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
 - 3.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접수, 적합 여부의 통보 및 현장조사의 실시 등
 - 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명령
 - 3의3.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공
 - 4.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마련
 - 5.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관리 등
 - 6. 삭제 < 2021. 3. 30.>
 - 6의2. 삭제 < 2021. 3. 30.>
 - 7.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8의2. 삭제 < 2021. 3. 30.>
 - 9.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 10.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 7. 6., 2017. 12. 26., 2018. 11. 27., 2019. 11. 26., 2020. 9. 29., 2021. 3. 30.>
-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 2의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및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의 조사
-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의 접수·확인 등
- 4.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접수 및 중지 해제 여부 통보
- 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등
- 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 7.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
- 8.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 9.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등
- 10.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 1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및 정보제공 등
- 11의2.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 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 12.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 1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및 기간연장 승인 등
- 14.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및 조치 명령 등
- 14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15.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 16.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등
-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수리 등
- 19.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
- 19의2.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
- 20.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 21.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
- 2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사항만 해당한다)
- 23. 법 제51조제2호에 따른 청문
- 2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 25.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협회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17. 5. 8.>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6. 7. 6,, 2017. 5. 8.>
-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 2.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 3.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협회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20. 9. 29.]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보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본조신설 2017. 3. 27.]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2128호,2021. 11. 19.>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 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나.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7,200분의 1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라. 다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영업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3) 1) 및 2)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해당 업체가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휴업 등의 이유로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등의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이나, 영업정지 대상 영업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정한다.
- 마. 다목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	법 제64조	600	800	1,000

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제출한 경우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600	800	1,000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 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한 경우	, ,	600	800	1,000
라.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 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1항제3호	600	800	1,000
마.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 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80	240	300
바.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 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제3호	600	800	1,000
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 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1항제3호	600	800	1,000
아.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 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600	800	1,000
자. 삭제 <2021. 3. 30.> 차. 삭제 <2021. 3. 30.> 카. 법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1)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		300	400	500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1)외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한 변		600	800	1,000
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타. 법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	법 제64조	180	240	300
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	제2항제3호			
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파. 법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법 제64조	600	800	1,000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제1항제6호			
하지 않은 경우				
하.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법 제64조	180	240	300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	제2항제3호			
신고를 한 경우	의2			
거.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	법 제64조	600	800	1,000
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	제1항제7호			
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				
정하지 않은 경우				
너.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	법 제64조	180	240	300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	제2항제4호			
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				
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		600	800	1,000
지 않고 폐업ㆍ휴업하거나 유해화	제1항제8호			
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경우 러.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	법 제64조	600	800	1,000
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9호			,
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	버 게61ス	600	800	1,000
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		800	800	1,000
화학물질 영업을 한 경우	\\\\\\\\\\\\\\\\\\\\\\\\\\\\\\\\\\\\\\			
어디 아이들의 생물을 안 생수 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번 제61조	600	800	1,000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		000	000	1,000
로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 ·	الت ١١٠١ ١١٠١			
지 보고 있다, 단계 이 1년의 필립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				
1 마다리 제 그는 기의한 3	l l			· I

· 수				
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	법 제64조	180	240	300
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항제5호			